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98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벌 전환 및 과태료 수준 조정 ...	3

I. 개요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98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벌 전환 및 과태료 수준 조정

현행	개정안												
☐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과태료 전환 ○ 과실의 경우에 대한 단서 규정 (제44조제2항1) 단서) <table border="1"> <tr> <th>조문 (제44조제2항)</th><th>처벌</th></tr> <tr> <td>본문</td><td>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r> <td>단서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td><td>300만원 이하의 벌금</td></tr> </table> (제2호) 과실로 용도세울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 (제5호) 과실로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발급(제44조제3항2)) <신설> <신설> <신설>	조문 (제44조제2항)	처벌	본문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서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table border="1"> <tr> <th>조문 (제44조제2항)</th><th>처벌</th></tr> <tr> <td>본문</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2">(단서 삭제)</td></tr> </table> <삭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아래의 각 호 신설(제46조제1항) (제3호) 과실로 용도세울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 (제4호) 과실로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 (제5호)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발급	조문 (제44조제2항)	처벌	본문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조문 (제44조제2항)	처벌												
본문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서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제44조제2항)	처벌												
본문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 과태료 수준 조정													

○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제46조제2항3))	○ <u>2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4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	--

* 정일영의원안 2026. 2. 24. 발의(의안번호 16998)

□ 개정안은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해당 용도 외 사용 등의 의무 위반으로서 과실로 인한 경우에 대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용도세율 해당 용도 외 사용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포함된 벌금의 과태료 전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개정안에 따른 벌금의 과태료 전환]

현행조문	처벌 대상행위	현행 처벌	개정안
제44조 제2항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제2호)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수출면세에 따른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제5호)	(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⁴⁾)
제44조 제3항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발급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⁵⁾

□ 현재 정부에서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나 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음.⁶⁾

TF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⁷⁾ 발표를 통해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강조함.

□ TF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는 세부내용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대한 110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포함된 재정경제부 소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에 대한 개선안에 따라 본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⁸⁾

4) 안 제4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5) 안 제46조제5호 신설

6) 재정경제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2025년 8월 1일 제1차 회의 개최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2025.8.1.)

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9.30.

8)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제시한 110개 개선안 중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개선안에 따라 발의된 관세 관련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TF 개선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의 개정사항 중 용도세율 또는 관세 면제 적용 물품의 용도의 사용·양도 시에 그 세율이 같거나 낮은 쪽으로 사용·양도하는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을 과태료 200만원으로 낮추는 사항은 「관세법」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⁹⁾에 맞춰 통일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서 정하는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예로 신고의무 위반, 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자료제출 및 보고 거부 및 거짓 이행 등 대체로 절차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개정안	발의자	의안번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	정일영	22169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221709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2216950

9)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하는 한편,¹⁰⁾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¹¹⁾

□ 용도세율 적용 또는 재수출면세로 관세 혜택을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용도세율 제도 등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관세 탈루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부당 수취했다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과태료 전환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부과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에 따라 대상자가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측면은 존재하므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부과 상한액 상향으로 실질적인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되도록 하고¹²⁾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¹³⁾ 하는데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3백만원 상한이 과태료 1천만원 상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09-810.

11)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607.

12)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607.

1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10.

한으로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로 기발표된 사항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 과태료로 전환하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관세법」 수준으로 하향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있는 사항인 용도세율 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된 물품의 용도 외 사용·양도에 대한 벌금 처벌은 「관세법」에도 동일한 형태의 처벌 규정이 있고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이 같이 발의돼 있어 같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4)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093, 발의일자: 2026.2.26.